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기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03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8월 12일
발 의 자: 김기덕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영철,
김원중, 김원태, 박강산,
박승진, 아이수루, 유정희,
이영실, 이종환, 정준호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그동안 서울특별시 체육회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조례상, 위탁 등의 별도 조항이 부재하여 경쟁입찰 등을 통해 공모사업 방식으로 위탁사업을 추진해왔음
- 올해 초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일부개정법률안(‘24.2.) 개정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 및 수익계약 등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의 근거가 마련됨
- 이에 관련 상위법령에 근거한 본 조례 개정으로, 서울시 체육회 등의 시설 운영 시 대부 및 수익계약 등 위탁 등의 근거 조항 마련을 통한 보다 시민 중심의 질적인 체육진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2. 주요내용

- 가.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수익계약 등으로 위탁할 수 있는 별도 조항 신설 (안 제18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·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(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) 이내로 하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,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·수익, 수의계약에 의

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
	<u><신 설></u>	<u>제18조의2(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</u> <u>시장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·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(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) 이내로 하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</u> <u>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,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</u>

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·수익, 수익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른다.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18조의2(공유재산의 대부 등)	△	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 ¹⁾ 에 따라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본 조항의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구체적인 지원범위 등이 정해진 바 없어 현재로서는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□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- 동 개정안 제18조의2(공유재산의 대부 등)에 따라 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대상 대부·사용 관련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, 관련부서 확인결과(서울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) 공유재산의 사용범위, 사용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현재로서는 세입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또한 본 사안의 경우 추계에 활용할 만한 자료가 적고,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통상적인 사례를 통한 자체추계²⁾ 또한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당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계분석관 손제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1) 동 개정안은 또한 상위규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임

「국민체육진흥법」

제33조의3(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2) 다만 서울시립체육시설로 전제하여 추정할 경우 별도의 세입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

⇒ 관련부서 확인결과(서울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) 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·행사의 경우 대부분 서울시와 공동주최하여 사용료 미부과 대상임에 따라 별도의 세입감소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